

2018년도

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 안건

- ▣ 일 시 : 2018. 12. 21.(금) 14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서연호(위원장), 진명(정혜린), 채금석, 안귀숙,
신태근, 조일상, 장남원, 홍나영, 정복상, 박상미,
김태식, 이정덕(이상 12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 1건】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낙화장’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1
2.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5
3. ‘장 담그기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7

【검토사항 1건】

1. ‘전통어로방식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10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낙화장’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낙화장’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(2018.9.14.)에서 ‘낙화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, 김영조를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’으로 의결하였음.
- 이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(2018. 10. 4 ~)한 후 해당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 현황

- 지정명칭 :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
- 지정일 : ‘10. 10. 1.
-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1명) : 김영조(‘53년생, 남 / ‘10. 10. 1. 인정)
 - 전수교육조교(1명) : 김유진(‘82년생, 여 / ‘16. 4. 21 인정)

2) 추진 경과

- 2018년 전승자 총원 계획에 포함(‘18.1.23)
-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접수(‘18.3.16~4.16)
-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(‘18.5.10)
-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(‘18.5.25)
-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실시(‘18.6.19)
-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결과 검토(‘18.7.20)
-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실시(‘18.8.31)
-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(2018. 10. 4)

3) 예고사항(관보 제19350호 / 2018.10.4. / 문화재청 공고 제2018-307호)

○ 인정예고 내용

지정번호 및 명칭	구분	성명	성별	생년월일	가·예능	주소
낙화장	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	김영조 (金榮祚)	남	1953.10.16	낙화	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

○ 예고 사유

- 낙화장(洛畵匠)은 한지를 비롯하여 천과 나무, 가죽 등 다양한 바탕소재 위를 인두로 지저서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, 전승가치 및 전승환경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.
- 김영조는 낙화장의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.

4) 예고 결과 : 이의제기 없음

라. 검토의견

- 김영조를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'으로 의결함에 따라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하였으며('18.10.4~), 인정 예고기간의 이의제기가 없었음.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'낙화장'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낙화장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심의할 사항 : 국가무형문화재 '낙화장' 종목 지정 및 '낙화장'보유자 인정 여부

바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낙화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, 김영조를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2명, 가결 12명

2.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‘목조각장’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조병현 전수교육조교(2013.1.14)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5호 ‘영천 목조각장’ 보유자로 인정(2018.10.18)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관련 근거

-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(2016.3.28)

법 률	시행령
제21조(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 1~8. (생략) 9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u>	제19조(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)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</u>
제32조(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,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. ③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	

2) 추진경과

- **(청문실시)**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‘목조각장’ 전수교육조교인 본인(청문당사자 조병현)을 문화재청이 인정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, 문화재청에서 2018. 12. 28(금)에 실시 예정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함(‘18.12.18.)

라. 검토의견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조병현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심의할 사항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

바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교육조교 조병현을 인정 해제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2명, 가결 12명

1. ‘장 담그기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

가. 제안사항

‘장 담그기’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(‘18.10.19.)에서 ‘장 담그기’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(‘18.11.1.~)하고,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경과

-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보고(‘18.1.23.)
-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(‘18.5.18.~9.24.)
- 종목 지정 예고 검토(무형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, ‘18.10.19.)
 - ‘장 담그기’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
 -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.

2) 예고사항(관보 제19369호 / 2018.11.1. / 문화재청 공고 제 2018-328호)

○ 예고내용

- 문화재명 : 장(醬) 담그기
- 지정사유
 - 장(醬)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, 우리 음식의 근간임.
 -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,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써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.
 -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(口傳)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, 한국의 주거문화, 세시풍속, 기복신앙,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

있는 문화적 자산임.

-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‘장’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, 연초(年初)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,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곱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‘두장(豆醬) 문화권’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.
-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. 다만,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,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.

○ 예고결과 : 이의제기 없음.

라. 검토의견

-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‘장 담그기’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마. 심의할 사항 : ‘장 담그기’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

바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‘장 담그기’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
 -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2명, 가결 12명

검 토 사 항

1. '전통어로방식'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

가. 제안사항

'전통어로방식'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에 따라 '전통어로방식'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('18. 5~10월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경과

-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('18.1.23.)
- '전통어로방식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('18.5.8.~ 10.31.)

2) 학술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'18.5~10월
- 조사내용
 -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
 - 조사지표별 심화조사

3) 조사내용

<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>

- 지형과 조류의 흐름,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[漁箭]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,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.
-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(口傳)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, 한국의 어촌문화, 자연과 생태, 계절과 물때를 살피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

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.

<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>

- 전통어로방식은 특정 지역이나 가문,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어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.

<종목 명칭에 대한 검토>

- '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('18.1.23.) 시에는 '전통어로방식(죽방렴, 석방렴)'으로 종목 명칭이 검토되었으나, 전통어로방식의 범주에 과거 어살로 분류된 4가지 형태, 즉 살·방렴·건방렴·석방렴을 기준으로 삼고, 토전(土箭)·방구렴(防口簾) 등 서해안 '살'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어구,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상도의 죽방렴, 그리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'주벽[柱木網]'과 남해안을 대표했던 장살과 줄살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'전통어로방식(죽방렴, 석방렴)'보다 '전통어로방식'을 제안함.

라. 검토의견

- 역사성, 학술성, 예술성·기술성, 대표성, 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'전통어로방식'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.
-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검토할 내용 : '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

바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
 -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2명, 가결 12명